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95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2205878	박성준의원	2024.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8156	권영진의원	2025.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0239	성일종의원	2025.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2213487	이용우의원	2025.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3514	이용우의원	2025.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5368	임이자의원	2024.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1984	김주영의원	2025.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4566	정부	2025.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1.3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6410	정혜경의원	2026.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1.3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6.)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3.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

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제77조의8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

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중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소득수준에 관한 조사·분석

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중전의 제3호의2) 중 “비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삭 제</p> <p>2. 해당 사업에서 <u>소정(所定)근로시간</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시간 미만인 근로자</u></p> <p>3. ~ 5.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적용 제외) ① ----- ----- ----- ----.</p> <p>2. ----- <u>보수가</u> ----- ----- -- <u>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u></p> <p>1. <u>일용근로자</u></p> <p>2. <u>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u></p> <p>3. <u>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u></p>

② ~ ④ (생략)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 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2. (생략)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생략)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로 본다.

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② (생 략)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
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
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
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 설>

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⑧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생 략)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
 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
 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
 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
 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
 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
 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
 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
 ·월 보수액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
 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
 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근
 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 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 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3. (생략)

<신 설>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 11.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3의3. -----
-----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

4. ~ 11.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각 호-----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p>2. (생략) <u><신설></u></p> <p>③ (생략)</p>	<p><u>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u></p> <p>2. (현행과 같음)</p> <p>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p> <p>③ (현행과 같음)</p>
--	--